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
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청소행정과)

의안번호	제 61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2. 11. 14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('22.6.14, 공포·시행)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정비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2. 9. 29. ~ 10. 19. (20일), 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(2022. 6. 1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-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(茶類)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14일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 제2호1)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,
- 안 제2조 정의규정 중 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 따라 ‘음식물류의 조리·판매를 주로하지 않는 다류, 아이

1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4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)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5. 12. 22., 2016. 6. 30., 2022. 6. 14.>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[주로 다류(茶類)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. 다만,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,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.

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.’ 를 ‘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’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